한빛상사 계약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빛상사(이하 "회사")가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의 체결, 승인, 변경, 만료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업무를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객"이란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거래처라고도 한다. 고객은 고객ID, 고객명, 업종, 지역, 담당자 정보로 관리한다.
2. "계약"이란 회사가 고객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과 합의한 약정을 말한다. 모든 계약은 계약ID, 계약명, 계약금액, 시작일, 종료일, 상태를 가진다.
3. "계약금액"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제외 총 거래금액을 말하며, 단위는 원으로 한다.
4. "담당자"란 고객별로 지정되어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관리하는 회사 영업부서의 직원을 말한다.
5. "계약상태"란 계약의 진행 단계를 말하며 진행중, 종료, 해지 중 하나로 구분한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3조(고객 등록)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은 계약 체결 전에 고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 고객을 등록할 때 담당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고객ID를 부여한다. 고객ID는 "C"와 세 자리 숫자로 구성한다.

제4조(계약 체결 절차)

① 계약은 담당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5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체결한다. ② 계약ID는 계약 체결 연도와 일련번호로 구성하며, 하나의 계약은 반드시 하나의 고객에 속한다. ③ 하나의 고객은 여러 건의 계약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제3장 승인

제5조(승인 기준)

계약금액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

계약금액	승인권자
5천만원 미만	영업팀장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영업본부장
3억원 이상	대표이사

제6조(승인 절차)

① 담당자는 계약 승인 요청서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고객 신용등급을 기재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한다. ② 승인권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를 결정한다. ③ 반려된 계약은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만료와 갱신

제7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만료)

① 종료일이 지난 계약은 계약상태를 종료로 변경한다. ② 담당자는 종료일 60일 전까지 고객에게 만료 예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갱신)

① 고객이 갱신을 요청하고 승인권자가 승인한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갱신된 계약은 새로운 계약ID를 부여받으며, 종전 계약과의 관계를 기록한다. ③ 갱신 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승인 기준을 다시 적용한다.

제10조(해지)

고객이 청구서 대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된 계약의 계약상태는 해지로 변경한다.